

정기(기동점검) 점검 결과보고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 점검일시 : 2020.01.09 (목)
- 점검결과
- ◆ 점검자 : 전용현

<p>○ 추락재해 예방(도시철도토목부)</p> <p>- 1번 출입구 어스앵커에 설치된 하중계는 계측선이 고소에 있어 계측 또는 계측선 연결 작업 시 추락우려가 있으니 안전대책 강구 후 작업 요망.</p> <p>※ 건설안전기본지침 P-12 (추락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p>	
<p>○ 추락재해 예방(도시철도토목부)</p> <p>- 2번출입구 복공판 단부는 분전반 조작작업시 근로자가 사면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니 안전난간 보완 요망.</p> <p>※ 건설안전기본지침 P-12 (추락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p>	
<p>○ 낙하·비래 재해 예방(도시철도토목부)</p> <p>- 4번출입구 자재투입구는 낙하재해 예방을 위하여 수직보호망을 밀실하게 보완하거나 말끝막이판을 설치하기 바람.</p> <p>※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 1 (안전난간)</p>	

○ 건설기계 안전(도시철도토목부)

- 사무실 앞 자재적치장에서 인양작업중인 이동식크레인은 전도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웃트리거를 최대한 인출한 후 작업하기 바람.

※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33(이동식크레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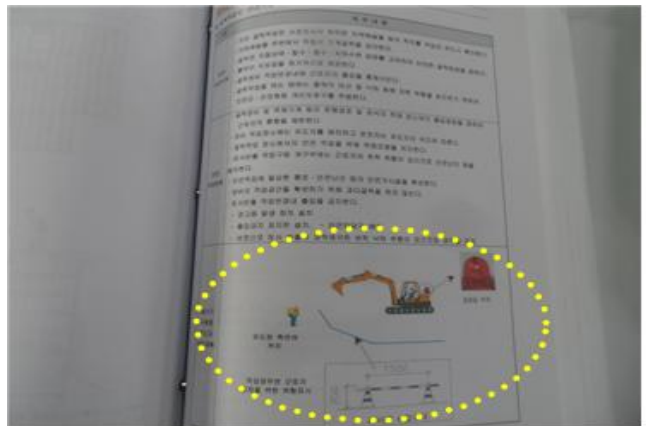


○ 건설기계 안전(도시철도토목부)

- 3번 외부출입구 굴착작업은 백호와 근로자간의 협착 및 충돌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

- ① 근로자의 출입방법을 정하여 유도자의 통제에 따라 작업자 이동 및 장비 가동
- ② 자재투입구를 통한 굴착토사 반출용 버킷의 낙하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 안내 및 접근 금지 조치

※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32(굴착기)
※ 건설안전기본지침 P-12
(낙하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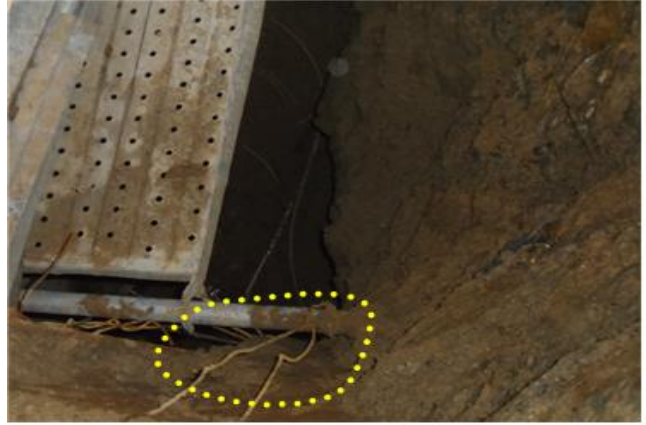
○ 가설비계 안전(도시철도토목부)

- 3번 외부출입구 정화조 철근조립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작업발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

- ① 작업발판을 강연선으로 지지하고 있어 붕괴 재해 우려가 있으니 지지방법 개선 요망.
- ② 작업발판 측면부는 빈공간이 없도록 밀실하게 설치 요망.



※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 8
(강관비계)



○ 기타 안전관리(도시철도토목부)

- 건설사업단 순찰일지 점검결과 순찰사진 및 안전점검 내용 등을 적정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 각 작업장별 순찰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사진에 순찰일시가 표시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구분	출발구 가시성 및 굴착 고역권 표시현황	출발구 #1.2.3.4 고역권표양 과일현황	도시공사 가시성 과일현황	82.38	고역권 교량기초 등 표시현황
주요 안전작업 현황 (위험 요인)	1. 환기구비 인접 산부인과 관련 체계적 점검		2. 가스 저항소 자재 미설치		
	3. 환기구비 측벽 굴착면 노출		3. 감재 도하한 즉시 시공조치		
	3. 말미에 반질 하부 일부만 고립 불안한 상태		3. 말미에 반질고립 부하방지 시공조치		
	4. 횡타기 비산방지 기밀막 미설치		4. 환부에서 기밀막 연장설치		
	5. 상수도 연결부 노출 탈락 위험		5. 특수일출 설치 금지		
현 장 사 진					